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다36081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상 외 1인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9. 4. 24. 선고 2008나2741 판결
판 결 선 고 2009. 8.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

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 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고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참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 1386 판결 참조) 지체상금 지급채무의 보증은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하자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시공보증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_____

주 심 대법관 양승태 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